

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09.12.31>

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(제18조제4호 관련)

1. 계산기 및 전자수첩
2. 면도기,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
3. 휴대용 전등
4. 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
5.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(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)
6. 카메라
7. 시계
8. 어린이용 완구
9. 유희용구 또는 실내 게임용구